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2호 2024. 1. 8.(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6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3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28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4-6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4. 1. 4.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10091	35-11-2 0.9719	127-49- 15.7157	중부	288389.3 7	274778.5 0	226.036	옥종면 회신리 908	2023-12-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2	35-11-1 9.4652	127-49- 18.4175	중부	288343.5 0	274847.24	220.571	옥종면 회신리 908	2023-12-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3	35-11-1 8.5560	127-49- 15.5713	중부	288314.8 9	274775.46	229.653	옥종면 회신리 908	2023-12-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4	35-01-0 2.9813	127-53- 26.0450	중부	269398.2 7	281282.15	42.290	진교면 고룡리 산16-4	2023-12-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5	35-01-0 2.9839	127-53- 30.0587	중부	269399.2 6	281383.91	30.368	진교면 고룡리 696-1	2023-12-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6	35-01-0 1.9160	127-53- 33.0013	중부	269367.0 2	281458.81	28.828	진교면 고룡리 694	2023-12-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7	35-01-0 3.1821	127-53- 39.6134	중부	269407.5 4	281626.1 0	18.999	진교면 고룡리 863	2023-12-0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8	35-02-2 2.0723	127-48- 38.7097	중부	271773.6 3	273977.43	87.600	고전면 성천리 909-2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099	35-02-2 1.2168	127-48- 42.5462	중부	271748.0 6	274074.88	72.947	고전면 성천리 978-1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0	35-02-2 3.6737	127-48- 43.8273	중부	271824.0 4	274106.74	70.448	고전면 성천리 982-3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1	35-02-2 3.8095	127-48- 39.0457	중부	271827.2 4	273985.51	88.411	고전면 성천리 산156-1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2	35-08-5 8.9337	127-51- 00.3018	중부	284034.1 6	277461.96	195.885	북천면 화정리 1652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3	35-08-5 8.1807	127-51- 05.3828	중부	284012.0 5	277590.77	179.835	북천면 화정리 1645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4	35-08-5 6.6081	127-51- 04.9023	중부	283963.4 8	277579.03	183.061	북천면 화정리 1652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5	35-08-5 7.0770	127-51- 01.7189	중부	283977.2 4	277498.32	197.441	북천면 화정리 1319-1	2023-12-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6	35-13-5 5.5420	127-38- 42.9148	중부	293034.9 4	258737.68	124.127	화개면 운수리 328-26	2023-12-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7	35-13-5 4.9827	127-38- 44.4276	중부	293017.9 5	258776.04	121.315	화개면 운수리 328-5	2023-12-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8	35-13-5 3.0035	127-38- 45.1460	중부	292957.0 7	258794.61	120.182	화개면 운수리 861	2023-12-0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09	35-00-0 4.0570	127-50- 04.7539	중부	267538.2 5	276193.91	27.821	금남면 덕천리 1468	2023-12-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0	35-00-0 3.4269	127-50- 05.7780	중부	267519.0 5	276220.04	27.822	금남면 덕천리 560-1	2023-12-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1	35-00-0 3.4496	127-50- 07.1946	중부	267520.0 5	276255.96	27.822	금남면 덕천리 559-1	2023-12-1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2	35-12-1 0.4288	127-42- 51.9036	중부	289838.5 8	265057.06	312.651	악양면 등촌리 539	2023-12-1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3	35-12-1 3.8813	127-42- 55.2233	중부	289945.5 8	265140.26	296.098	악양면 등촌리 680	2023-12-1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4	35-12-1 4.9024	127-42- 54.6084	중부	289976.9 4	265124.48	299.680	악양면 등촌리 680	2023-12-1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5	35-04-4 0.5428	127-44- 30.7952	중부	275992.1 3	267661.93	25.171	하동읍 두곡리 511	2023-12-1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6	35-04-4 3.0412	127-44- 28.5601	중부	276068.7 1	267604.74	17.825	하동읍 두곡리 505	2023-12-1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7	35-04-4 1.9423	127-44- 25.8470	중부	276034.3 3	267536.25	10.016	하동읍 두곡리 642-2	2023-12-14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8	35-01-4 4.3282	127-54- 11.7738	중부	270682.9 3	282430.0 0	2.577	진교면 진교리 426-52	2023-12-1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19	35-01-4 3.7331	127-54- 09.6522	중부	270664.1 0	282376.38	2.580	진교면 진교리 426-72	2023-12-1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0	35-01-3 8.3970	127-54- 12.0208	중부	270500.1 9	282437.9 2	2.515	진교면 진교리 302-11	2023-12-1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1	35-01-3 9.2038	127-54- 14.3370	중부	270525.5 9	282496.4 1	2.453	진교면 진교리 302-351	2023-12-18	맨홀식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2	35-05-0 4.1994	127-47- 00.4752	중부	276750.2 0	271448.2 8	38.540	적량면 동산리 산94-1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3	35-04-5 7.7247	127-47- 03.1314	중부	276551.1 9	271517.1 4	28.650	적량면 동산리 526-4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4	35-04-5 3.7695	127-47- 02.4806	중부	276429.1 7	271501.6 1	22.050	적량면 동산리 524-3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5	35-09-5 6.3816	127-55- 36.2760	중부	285867.0 1	284431.0 9	57.519	옥중면 북방리 824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6	35-09-5 5.8914	127-55- 34.1089	중부	285851.3 9	284376.3 9	59.200	옥중면 북방리 897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7	35-09-5 2.2886	127-55- 34.2084	중부	285740.3 8	284379.94	58.294	옥중면 북방리 824	2023-12- 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8	35-00-0 3.7976	127-48- 15.3207	중부	267507.4 9	273418.9 2	3.536	고전면 전도리 202-9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29	35-00-0 1.4095	127-48- 13.2674	중부	267433.4 7	273367.4 5	1.469	고전면 전도리 205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0	34-59-5 9.9888	127-48- 10.2468	중부	267389.0 7	273291.20	3.592	고전면 전도리 204-1	2023-12-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1	35-01-4 6.1282	127-54- 16.9826	중부	270739.6 0	282561.5 4	5.983	진교면 진교리 816-1	2023-12-2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2	35-01-5 0.5001	127-54- 15.0370	중부	270873.8 8	282511.00	6.205	진교면 진교리 816-1	2023-12-2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3	35-01-5 4.0519	127-54- 13.1597	중부	270982.9 1	282462.4 2	6.466	진교면 진교리 816-1	2023-12-20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4	35-01-4 0.7782	127-53- 59.9909	중부	270570.8 2	282132.2 9	46.985	진교면 진교리 155-1	2023-12-21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5	35-01-4 2.5768	127-53- 58.9218	중부	270626.0 1	282104.6 9	59.426	진교면 진교리 152-1	2023-12-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6	35-01-4 1.5011	127-53- 58.3395	중부	270592.7 2	282090.2 3	57.575	진교면 진교리 152-1	2023-12-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7	34-57-3 8.8215	127-46- 26.6344	중부	263017.8 8	270697.4 3	28.183	금성면 갈사리 산15	2023-12-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8	34-57-3 7.3204	127-46- 24.8767	중부	262971.2 8	270653.1 9	14.692	금성면 갈사리 619-1	2023-12-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39	34-57-3 5.5502	127-46- 24.2587	중부	262916.6 0	270637.9 4	13.411	금성면 갈사리 산15-26	2023-12-2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40	35-10-3 8.1863	127-42- 33.5584	중부	286992.4 7	264613.2 8	153.109	악양면 매계리 216	2023-12-26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41	35-10-3 7.3925	127-42- 37.0521	중부	286968.6 4	264701.8 6	138.370	악양면 매계리 993	2023-12-2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42	35-10-3 5.0871	127-42- 38.9786	중부	286897.9 4	264751.1 2	127.135	악양면 매계리 993	2023-12-2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43	35-10-3 6.6958	127-54- 40.7736	중부	287096.4 8	283015.07	72.076	옥종면 대곡리 407	2023-12-2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44	35-10-3 9.3785	127-54- 44.4804	중부	287180.0 1	283108.11	73.906	옥종면 대곡리 410-3	2023-12-2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점	W10145	35-10-3 5.4563	127-54- 47.1368	중부	287059.7 5	283176.44	70.321	옥종면 대곡리 369-3	2023-12-27	철재	세계측 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공고 제2024 - 28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민선8기 비전과 역점시책 추진, 군민 열망 등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조직체계 구축

3. 주요 내용

가. 담당 신설(5담당)

- 관광진흥과(명칭변경) : 관광기획
- 산림과(명칭변경) : 산림소득
- 안전교통과 : 교통정책
- 농산물유통과 : 농산물축제TF
- 농업소득과 : 딸기산업

나. 담당 통폐합(6담당 → 3담당)

- 산림정책, 산림경영 → 산림과 산림정책
- 산림휴양, 녹지조경 → 산림휴양
- 원예산업, 과수 → 원예과수

다. 부서 명칭 변경 및 담당 이관(4과)

- 미래전략담당관 → 지역활력추진단: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 공단설립
- 시설체육과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 문화관광과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 산림녹지과 → 산림과: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휴양, 산림소득

라. 담당 명칭변경(5담당)

- 문화관광과 슬로시티 →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 시설체육과 문화관광시설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 안전교통과 선진교통 → 안전교통과 교통행정
- 농축산과 농업인력 → 농업혁신
-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 → 농산물유통과 글로벌지원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53, FAX 880-2159, e-mail h841021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 포함)
-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별표,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 공단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개발, 슬로시티 등 문화관광”을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는 삭제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산림경영,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산림녹지”를 “산림휴양, 산림소득 등 산림”으로 한다.

2.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호 중 “선진교통”을 “교통정책, 교통행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농업정책, 농촌자원, 농업인력, 축산경영, 축산위생”을 “농업혁신, 농업정책, 농촌자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지원, 농산물융복합”을 “글로벌지원,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TF”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예산업, 과수”를 “원예과수, 딸기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의 설치) 부군수 밑에 <u>미래전략 담당관</u>을 둔다.</p> <p><신 설></p> <p>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u>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u>를 둔다.</p> <p>② 문화환경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u>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개발, 슬로시티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2. (생략)</p> <p>3. <u>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u></p> <p>4. (생략)</p> <p>5. <u>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공단설립 등 시설 체육에 관한 사항</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의 설치)① ----- <u>지역활력추진단장</u>-----.</p> <p>②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 공단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u>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u>-----.</p> <p>② -----.</p> <p>1. <u>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u></p> <p>2. <u>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 <u>산림휴양, 산림소득 등 산림</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삭 제></p>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안전기획, 자연재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선진교통 등 안전교통에 관한 사항

6. ~ 7. (생략)

제13조(소관사무) (생략)

1. 농업정책, 농촌자원, 농업인력, 축산경영, 축산위생 농축산에 관한 사항

2. 녹차산업, 녹차기반, 유통마케팅, 수출지원, 농산물융복합 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농업지원, 식량특작, 원예산업, 과수 등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교통정책, 교통행정-----

6.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농업혁신, 농업정책, 농촌자원, 농업인력,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 -----

2. -----, 글로벌지원,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TF -----

3. -----, 원예과수, 딸기산업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

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을 “단장”으로 한다.

제3조 “(담당관)”을 “(단장)”으로 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가목 중 “문화관광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문화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목은 삭제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으로 하며, 라목(종전의 다목)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나. 관광진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군 본청 과장”을 “군 본청 단장, 과장”이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청 단장,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군 보건소장”을 “군 보건소 과장”이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소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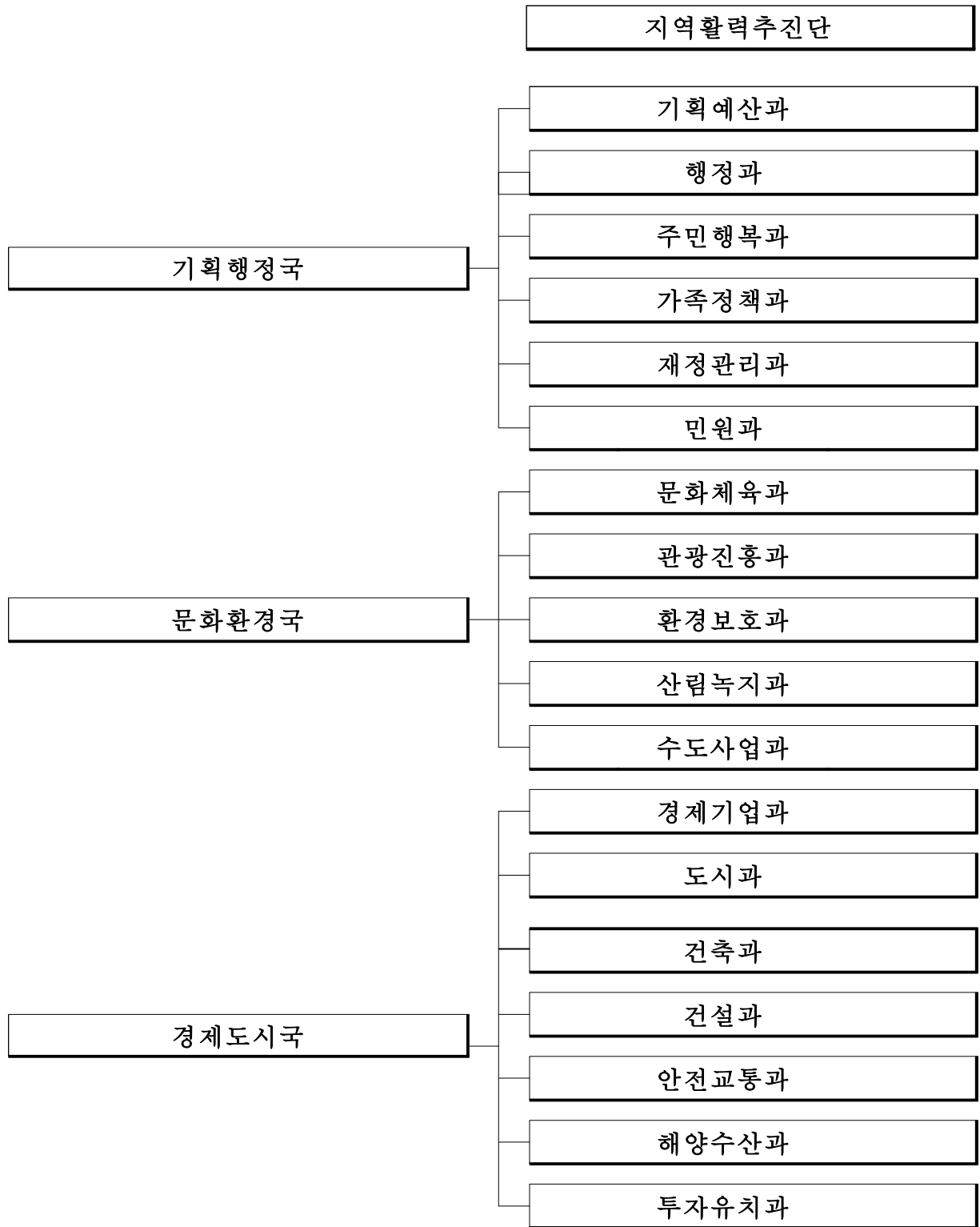
②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지역활력추진단

분장 사무
엑스포 후속조치 및 대외적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공단설립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분장 사무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법제, 송무,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장

분장 사무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 발전 및 직원 교육 등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주민행복과장

분장 사무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과장

분장 사무
보육·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시설,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재정관리과장

분장 사무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세입·채납관리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관리, 재산세,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과장

분장 사무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

2.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장

분장 사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 지정,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과장

분장 사무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대규모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장

분장 사무
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과장

분장 사무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산불방지,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지관리, 임도, 산사태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임산물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마을 쉼터, 꽃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과장

분장 사무

상수도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하수도 시설 설치, 지도 등에 관한 사항

하수도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제도시국

경제기업과장

분장 사무
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중소·사회적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외의 사항)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과장

분장 사무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심 공원(정원)조성 등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

분장 사무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건축분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과장

분장 사무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교통과장

분장 사무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예방 및 처벌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장

분장 사무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장

분장 사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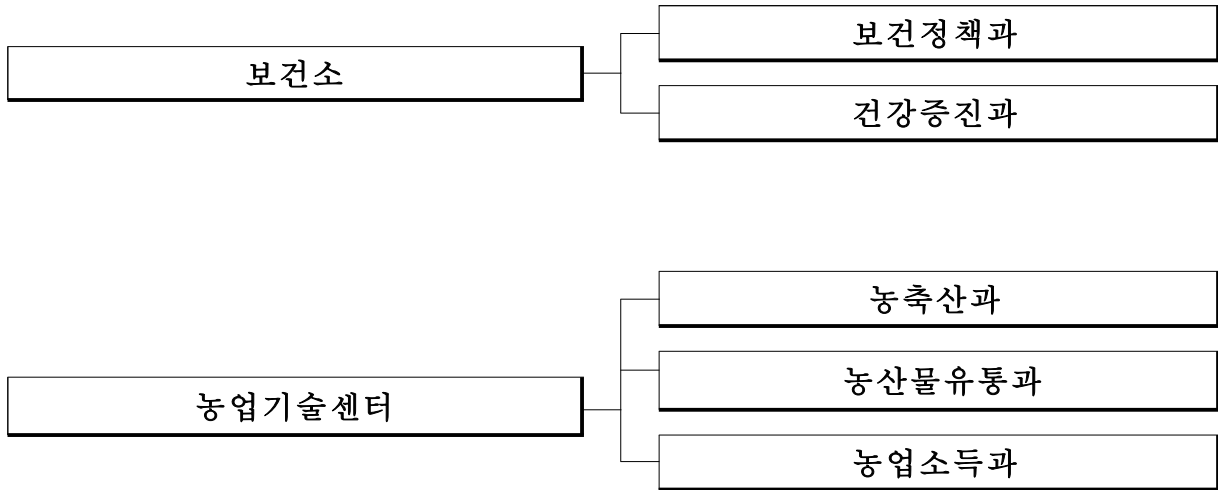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대송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두우레저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2]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의2 및 제9조 관련)



1.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분장 사무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의약에 관한 사항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혁신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장

분장 사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만성질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치매예방 등 치매안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등 진료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분장 사무
농업혁신 및 국내외 농업인력관리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

농산물유통과장

분장 사무
녹차산업 육성·유통지원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유학 및 청년인력 해외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농산물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농업소득과장

분장 사무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직무) ① 국장 및 <u>담당관</u>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직무) ① -----<u>단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u>담당관</u>)<u>미래전략담당관</u>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3조(<u>담당관</u>)<u>지역활력추진단장</u>----- -----.</p>
<p>제3조의2(국장·과장)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u>문화관광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p>	<p>제3조의2(국장·과장)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u>문화체육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p>
<p><신 설></p> <p>나. <u>환경보호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p> <p>다. <u>산림녹지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p> <p>라. (생략)</p> <p>마. <u>시설체육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p> <p>3. (생략)</p> <p>제4조(사무분장) <u>군 본청 과장</u>의 사</p>	<p>나. <u>관광진흥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p> <p>다. (현행 나목과 같음)</p> <p>라. <u>산림과장</u>----- ----- -----</p> <p>마. (현행 라목과 같음)</p> <p><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무분장)①<u>군 본청 단장</u>, 과</p>

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신 설>

제6조의2(사무분장) 군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신 설>

제9조(사무분장) 군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신 설>

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본청 단장,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
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사무분장)①군 보건소 과
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한다.

② 보건소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분장)① 군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세부 분장
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

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